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14 선고 2021가단51165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진, 나봉수

변 론 종 결 2022. 4. 19.

판 결 선 고 2022. 6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(소관: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현금출납공무원)에 대하여 가지는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, E(병합)
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신용보증기금은 2016. 3. 29. 및 2016. 5. 12. ‘F’을 운영하는 A와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. A는 G 주식회사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각 제출하고 G 주식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각 받았다.

순번	계약체결일	대출금액	보증금액	보증기한
1	2016. 3. 29.	85,000,000원	76,500,000원 (72,675,000원으로 감액됨)	2018. 3. 28. (2019. 9. 27.로 연장)
2	2016. 5. 12.	720,000,000원	648,000,000원	2017. 5. 11. (2020. 5. 8.로 연장)

나. A는 2019. 6. 20.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4,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고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다. 피고는 2019. 12. 16.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1)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.

라. A는 광주지방법원 2020하단50307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이 사건 계속 중인 2020. 7. 24.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 원고는 2021. 2. 8.

신용보증기금을 수계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.

마. 이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23,729,271원을 배당받은 내용의 배당표가 2021. 10. 18.경 작성되었으나, 피고의 위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는 위 배당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7 내지 10호증(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

포함한다), 을 제2,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부인대상 행위의 성립 여부

(1)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이라고 한다)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‘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’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(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).

(2)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,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,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,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. 7. 30.에는 A 소유의 전남 해남군 H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, 2019. 9. 28.에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, ③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9. 12. 1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4,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,729,271원을 피고가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던 점, ④ A가 광주지방법원 2020하단50307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2020. 7. 24.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A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정한 파산채권자인 피고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, A는 위 행위로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나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(1)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

(2)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,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(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6637, 56644 판결 참조).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106962 판결2) 등 참조).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0015 판결,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).

(3)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, 을 제1, 3 내지 6, 8호증의 각 기재, 증인 A, I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① 피고의 남편 J는 2018. 1. 29. 피고 명의로 'K'라는 대부업 등록을 갱신하고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, A와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다. J는 A로부터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 2019. 6. 20. A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A에게 1억 2,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. 이처럼 대부업자가 돈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대부업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 해당한다.

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에 J의 형인 L의 계좌에서 1억 1,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, A는 같은 날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, 국세, 대출변제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.

③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G 주식회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만이

설정되어 있었을 뿐,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있지 않았다.

④ J는 A로부터 1억 2,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,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4,000만 원 및 피고의 A에 대한 대여원금 1억 2,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3,729,271원만을 피고가 배당받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.

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부인권의 대상이 됨을 알면서도 A에게 1억 2,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김성준

별지

1) 이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.

2) 대부업자에 관한 판결이다.